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2172
등록일자	2026. 1. 13.
결재일자	2026. 1. 13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복지정책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국장
김진희	특별휴가	하춘자	이유덕
협조	전결 2026. 1. 13.		

2026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계획

요 약

☀ 추진 근거

-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☀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 :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자
- 지급금액 : 사망위로금 200천원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
- 소요예산 : 16,000천원(200천원×80명) ※ 전액 구비

☀ 행정사항

- 신청 안내 철저 : 사망신고 시 신청 안내 ▶ 동 행정복지센터



복 지 정 책 과

2026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계획

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코자 함

I |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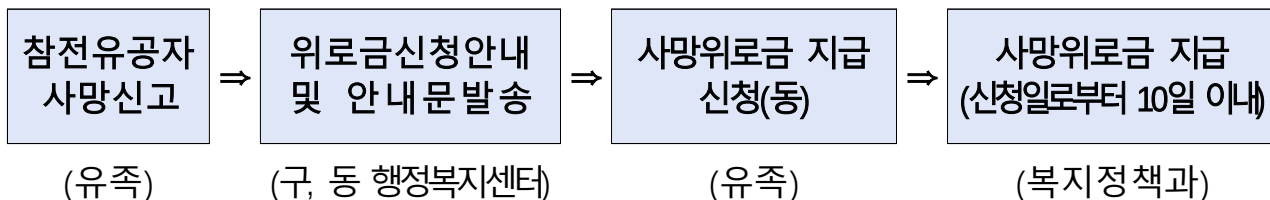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등의 책무)
- 「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II |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및 요건 : 80명(추정) ※ 2025년 지급 실적(45명, 9,000천원)
 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【붙임2】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급금액 : 200천원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
- 소요예산 : 16,000천원(전액 구비)

III | 세부 추진계획

① 지급 절차



② 지급 요건

- 사 망 자 :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
- 신청기한 :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제출

③ 신청 안내

- 대 상 :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
- 방 법
 - 부산광역시 송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명단 중 사망 신고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문 【붙임3】 일반우편 발송
 -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 시 신청 안내 ▶ 동 행정복지센터

④ 지급 신청

- 신 청 자 : 사망자의 유족 (※ 우선순위 적용)
 - ※ 사망위로금 지급받을 유족 및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
 - ①배우자, ②자녀,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
- 접 수 처 : 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류 : 신청서, 구비서류(가족관계등록증명서, 통장사본)

⑤ 사망위로금 지급

- 지급기한 :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
- 대상자 확인 :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, 필요시 보훈청 공문 발송
- 지급방법 : 유족(선순위자) 통장으로 계좌 입금

IV

행정사항

-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철저
 - 참전유공자 사망자 명단 확보, 분기1회 안내문 발송
 - 참전유공자 사망신고 시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
- 사망위로금 접수 시 공문발송 및 서류 전달 : 동 → 복지정책과

- 붙임 1.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
2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.
3.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문 1부. 끝.

【붙임 1】

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2.05.10 조례 제 997호

(일부개정) 2016.12.26 조례 제1190호

(일부개정) 2019.04.10 조례 제1310호

(일부개정) 2023.03.29 조례 제15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12.26, 2019.4.10>

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10>

제4조(지원사업)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29.>

1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
2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3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<개정 2019.4.10>

제5조(사망위로금)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10>

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, 절차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따른다. <개정 2016.12.26, 2019.4.10>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3.29.]

[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<2023.3.29.>]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[제6조에서 이동 <2023.3.29.>]

부칙 <조례 제997호, 2012.5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190호, 2016.12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310호, 2019.4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592호, 2023.3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

참전등록번호			-			-					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										처리기간 10일
참 전 유공자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					
	주 소										
	사망일자										
신청인	성 명					생년월일			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			
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				지급기관 (예금계좌)					
「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											
※ 구비서류 1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통장사본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> 1.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.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‘담당공무원 확인사항’을 확인(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*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											

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】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 (필수사항)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	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	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◦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□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 (필수사항)
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	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◦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,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,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.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.

년 월 일
 신청인(대리인) : (서명 또는 인)
 (필요시) 법정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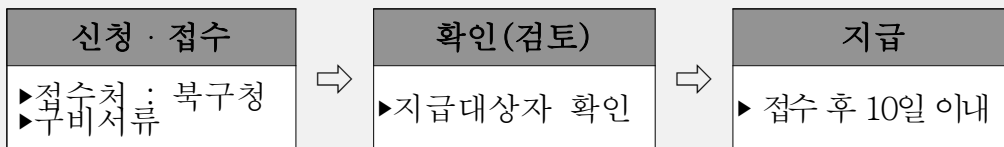
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

- ◇ 우리 구에서는 국가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,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·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 5월 「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습니다.
- ◇ 위 조례에 근거, 사망하신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>

- ① 지원 대상 및 요건 :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이면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유족
 - ※ 단,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
(1순위 : 배우자, 2순위 : 자녀, 3순위 : 부모 등)
- ②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③ 지급금액 : 20만원(1회)
- ④ 신청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
- ⑤ 처리절차



- ※ 구비서류 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.
② 참전유공자(사망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③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.

문의 북구청 복지정책과 (☎ 051-309-4316)

2026년 월



부산광역시 북구